

창업확산센터 운영규정

(제정 2013. 4. 8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창업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총괄하며, 학생들과 일반인들의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육성 발굴하고, 이를 성공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설치한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창업확산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 5.21.>

제2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창업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
2. 창업교육 운영 및 관리
3. 창업동아리 운영 및 관리
4. 창업아카데미 운영
5. 지역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관리
6. 그 밖에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3조(조직)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 산하에 필요한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매니저) 학생과 일반인의 교육 및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센터에 창업매니저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운영위원회는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로 갈음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중소기업청 지원금, 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본교자체 지원금,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제8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7-0-5-2 창업확산센터 운영규정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